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86080, 2014다86097(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86080, 2014다86097(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나4369, 2014나437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1. 28 선고 2011가단802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1. B

2. C

3. D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E

판결 선고 2015. 3. 26.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나4369, 2014나437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N

이 유

1.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본소 청구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대상청구권의 주체에 관하여

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으로써 피고들이 수령한 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판단에 가정적으로 부가된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가정적인 부가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F를 상속하여 I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J은 O에게 위 토지 일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위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위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원고는 1982. 3.경의 매매계약에 따라 O에 대하여 위 토지 일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또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J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변형인 원고의 O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O을 대위한 원고에게, J이 수령한 토지보상금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